

## 전자거래 분쟁해결기관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서울특별시, 한국소비자연맹(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전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내용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전자거래 시장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동 정책연구 등 업무협력
- 전자거래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소비자 정보제공을 위한 상호 지원·교류
-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의 상호지원
- 기타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상호 합의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단, 법령에 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적법한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비용부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협의조정) 본 협약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협약 종료일 전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매년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8조(효력) 본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4조(비밀유지), 제7조(협약기간), 제8조(효력)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기타) 각 기관은 서명날인 후 본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하고, 본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한다.

2019년 9월 1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원장 김영준

서울특별시  
SEUL METROPOLITAN GOVERNMENT

시장 박원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Consumers Union of Korea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원장 이희숙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원장 김석환